



의안번호

제127호

#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11. 19.

#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7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1. 1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선.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「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」 제19조~제24조 내용에 행정재산인 건물부분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,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용어인 “일반재산”, “대부”, “임대”, “임대료”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. 예고기간 : 2018. 10. 08 ~ 2018. 10. 29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체육진흥과(041-635-2433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“공공시설물임대 사용 허가” 를 “건물의 사용 허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설의 일부를 임대 및” 를 “건물의 일부를” 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중 “(임대료 감면)” 을 “(건물 사용료 감면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임대료” 를 “건물 사용료” 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“임대료 및 산출방법” 을 “건물 사용료 및 산출방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” 을 “행정재산을 사용허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, 제2항, 제4항 중 “임대료” 를 “건물 사용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임대” 를 “사용” 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중 “임대 우선순위” 을 “건물 사용허가 우선순위”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“임대 ” 를 “건물 사용허가” 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중 “임대허가의 취소” 을 “건물 사용허가의 취소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“임대계약” 을 “건물 사용허가” 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중 “(임대허가의 기간)” 을 “(건물 사용허가의 기간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임대계약” 를 각각 “건물 사용허가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	
입 안 자	공공시설사업소장	허	원
	공설운동장팀장	남	기 훈
	담당자	박 창 열 (041-746-8413)	



③ (생략)

④ 임대료는 건물분과 부지분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

1. 건물분은 건물평가액 × 면적 × 임대료율

2. 부지분은 개별공시지가 × 면적 × 임대료율 × 층수요율

⑤ 임대료율은 50/1000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**제22조(임대 우선순위)**

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 우선순위를 정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사용 목적일 경우 국가를 우선으로 한다.

1 ~ 7 (생략)

**제23조(임대허가의 취소)**

① (생략)

1 ~ 4 (생략)

5.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대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② ~ ④ (생략)

**제24조(임대허가의 기간)**

임대계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건물 사용료-----  
-----.

1. -----  
사용---

2. -----  
사용-----

⑤ 사용-----

⑥ (현행과 같음)

**제22조(건물 사용허가 우선순위)**

-----  
--- 건물 사용허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 ~ 7 (현행과 같음)

**제23조(건물 사용허가의 취소)**

① (현행과 같음)

1 ~ 4 (현행과 같음)

5. -----건물 사용허가  
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**제24조(건물 사용허가의 기간)**

건물 사용허가 -----

없다. 다만, 시장이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(국가를 포함한다)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임대계약 기간을 연장 하게 할수 있다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건물 사용허가  
-----.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해당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**3. 작성자**

공공시설사업소장 허 원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제13조(체육시설의 설치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0.>

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·이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12.2.17.>

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